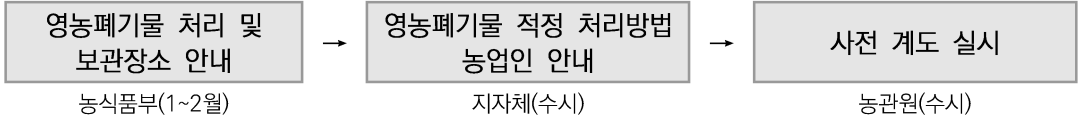


2 추진체계

| [업무 흐름] | [시기] | [주요 내용]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 및 홍보 | 매년 1~2월 (농식품부, 지자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본 직불수령자 대상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▶ 공동 집하장, 임시보관장소의 위치,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일정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안내 |
| ② 사전 계도 | 수시 (농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행점검 전, 명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,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안내한 후 처리하도록 계도 |
| ③ 이행점검 실시 | 매년 6~9월 (농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행 점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*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|
| ③-1 이행점검 사전통보 | 점검 1주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, 목적, 내용 등을 7일 전에 안내 |
| ③-2 점검실시 | 점검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본형 직불 지급대상 농지 등에 영농 폐기물이 버려져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|
| ③-3 보완요청 | 즉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영농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(14일 이내*) * 다만, 농업인이 지자체의 일제 수거의 날, 별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등 개별적으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날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|
| ③-4 보완결과 확인 | 지정된 날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완요청 필지 재방문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재점검 →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미감액 |
| ③-5 통지 및 의견청취 등 | 10일 이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적합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통지 및 10일 이내 의견청취 진행 |
| ③-6 감액대상자 확정 및 보고 | 10.1.까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액대상자를 확정하여 10.1.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|
| ④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| 10.1. 기준 (농식품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적합자에 대해서 감액처리 진행(10%) * 농식품부 → 지자체 통보를 통해 기본 직불금 지급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(10일 이내) |

가.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



[농식품부, 1~2월]

-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,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및 홍보
 - 농식품부에서 분석한 직불관할지 기준 전국 공동 집하장 및 임시보관장소 지정현황* 등에 대한 자료를 농관원, 지자체 등에 공유
 - *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되었고, 해당 리스트는 별도 송부
 - ** 임시보관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직불담당과 환경담당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방법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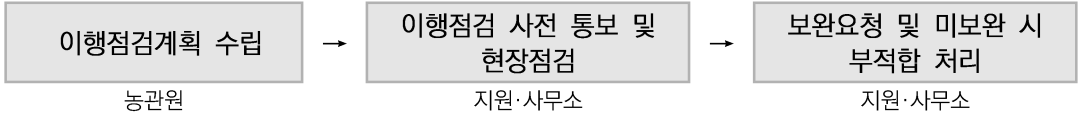
[지자체]

- 지자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, 생활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,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·운영
 - 농업인에게 안내문자, 우편,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지 소재지와 가까운 공동 집하장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영농폐기물 등이 농지에 방치, 매립 또는 소각되지 않도록 지도·교육·홍보를 추진
 - * 폐농약병·폐비닐 중심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,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환경부서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
 - 지자체(읍면동)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표준안내문 작성 후 농업인 필수 안내서 배부 시 농가 배포(참고 1)
-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,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한다.
 - 농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,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- 특히, 직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공동활동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

[농관원]

- 농관원은 이행점검 시작 전, 명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농지주변에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, 매립 및 소각된 농가에 대해서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실시

나. 이행점검(농관원)



- 농관원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, 사전 계도 시 폐기물 방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
 - 이행점검 대상지역 선정 시, 공동 집하장 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
 - 영농폐기물 등 수거·처리 이행점검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현장조사 대상 필지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
 - 영농폐기물 등 수거·처리 이행점검 시 현장 입회,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점검 7일전까지 사전통지 실시
 - *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, 문자메세지, 이메일 등도 가능
 - ** 다만,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 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이행점검 시 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이 적치·방치 및 소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
 - * 영농폐기물 ‘소각’ 이행여부 점검은 농식품부·환경부·산림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‘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’ 결과를 활용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 제3항 제1호에(영농폐기물에 한정)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같음
 - 농업인 등에게 1회*에 한하여 해당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보완요청 할 수 있고,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지 등의 영농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
 - *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, 지자체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·개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하는 등 농업인이 처리하기로 한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를 인정하여 줄 수 있음
 - * 보완요청을 한 경우 조사원은 현장사진, 농업인 서명·날인, 조사자 소견서(보완 요청사항)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

- 배출장소가 지정된 지역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은 7일 이내에 부적합 내용과 직불금 감액사항을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
 - * 다만,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·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(의견제출서 포함)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
-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농관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,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
 -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(다만, 이미 1회 보완요청을 하였고, 그럼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).
 - *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·날인 또는 부재 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(의견 제출서 포함)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
-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10.1.까지 완료하고, 해당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
 - * 지자체는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기본형 직불금 지급 전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

참고 1**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(예시)**

★ 지역별 처리방법은 엑셀자료(별도제공) 확인 후 작성

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(공동집하장 설치 지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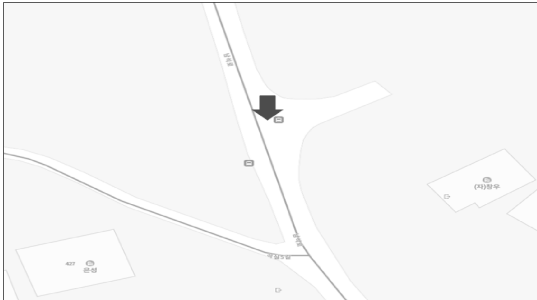
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10%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

- 폐농약용기류: 농약유리병, 농약플라스틱용기, 방제용기, 농약봉지
- 폐비닐류: 하우스비닐, 멀칭비닐 등 비닐류

2. 적정 수거·배출 방법

-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(폐농약병류, 폐비닐류)은 마을주변 공동집하장에 배출
-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백, 모종판,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·처리

3.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위치: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석판리 218

공동집하장 지도 이미지(예시)



공동집하장 현장 사진(예시)

4. 기타사항

- 공동집하장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
(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,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)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자체 로고 | ※ 관련 연락처 |
| | ○○ 읍면동 환경 담당 : 000-000-0000 |
| | ○○ 읍면동 직불 담당 : 000-000-0000 |
| | 지역 한국환경공단 : 000-000-0000 |

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(임시보관장소 지정·운영 지역)

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10%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

- 폐농약용기류: 농약유리병, 농약플라스틱용기, 방제용기, 농약봉지
- 폐비닐류: 하우스비닐, 멀칭비닐 등 비닐류

2. 적정 수거·배출 방법

-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(폐농약병류, 폐비닐류)은 마을주변 임시보관장소에 배출
 - ※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1462호) [별표 1]에 따라 영농폐기물은 수거·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
-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백, 모종판,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·처리

3. 영농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위치 : 주소기재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
| 지도 이미지(예시) | 현장 사진(예시) |

4. 기타사항

- 임시 보관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
(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,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)

| | |
|--------|--|
| 지자체 로고 | ※ 관련 연락처 ○○ 읍면동 환경 담당 : 000-000-0000 ○○ 읍면동 직불 담당 : 000-000-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: 000-000-0000 |
|--------|--|

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(공동 수거의 날 등 운영지역)

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10%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

- 폐농약용기류: 농약유리병, 농약플라스틱용기, 방제용기, 농약봉지
- 폐비닐류: 하우스비닐, 멀칭비닐 등 비닐류

2. 적정 수거·배출 방법

-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(폐농약병류, 폐비닐류)은 마을별 공동 수거일에 공동 수거장소로 배출하고, 지자체별 자체 처리지역은 지자체별 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개별 배출·처리

※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1462호) [별표 1]에 따라 영농폐기물은 수거·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

-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백, 모종판,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·처리

3. 영농폐기물 지역별 “공동수거의 날” 운영

※ (공동수거의 날)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부재 등 수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수거일·수거장소를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

- 해당 읍면동 :
- 공동 수거일 :
- 공동 수거장소 :

4. 영농폐기물 지자체별 자체처리 등 기타사항

- 해당 읍면동 :
- 자체 처리계획 :

5. 기타사항

- 공동 수거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
(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,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)

| | |
|--------|--|
| 지자체 로고 | ※ 관련 연락처 ○○ 읍면동 환경 담당 : 000-000-0000 ○○ 읍면동 직불 담당 : 000-000-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: 000-000-0000 |
|--------|--|

VII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



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.

| 담당기관 | 담당과 | 담당자 | 전화번호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| 공익직불정책과 | 과 장 | 044-201-1771 |
| | | 계 장 | 044-201-1774 |
| | | 담당자 | 044-201-1778 |
| | |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| 044-201-1781 |

* 전국 지자체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

1 개요 및 일반사항

가. 목적 :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,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, 생태계의 보전,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

나. 근거법령

-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업농촌 공익직불법”) 제12조, 제17조~제19조

〈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, 시행령 별표3 〉

[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]

-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·보관

〈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,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〉

-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·수거

〈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,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〉

-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〈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,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〉

-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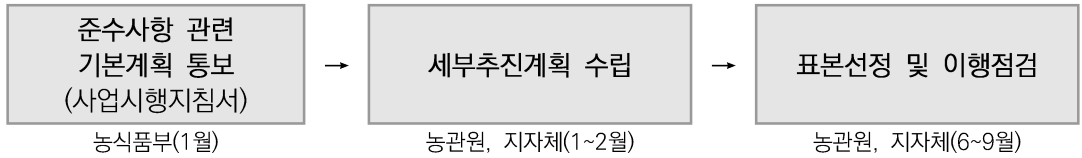
다.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

- '25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이행 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.
 - 이행점검 적용기간 : 2024. 10. 1. ~ 2025. 9. 30.(12개월간)
 - 적용시점 :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
-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% 감액

2 추진체계

| [업무 흐름] | [시기] | [주요 내용]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| 매년 1~2월 | ▶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|
| ↓ | | |
| ② 영농일지 배포 | 신청접수전 | ▶ 농업인필수 안내서에 포함하여 영농일지 배포 |
| ↓ | | |
| ③ 이행점검(농관원) | 6~9월 | ▶ 준수사항 위반 농가를 중심으로 표본 선정 ▶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점검 |
| ↓ | | |
| ③-1 이행점검 사전통보 | 점검 1주전 | ▶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, 목적, 내용 등을 7일 전에 사전 안내 |
| ↓ | | |
| ③-2 점검실시 | 점검일 | ▶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에서 부적합 결과를 확정할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* 다만,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|
| ↓ | | |
| ③-3 결과입력 | 완료시 | ▶ 농업인 의견서 검토 결과를 반영 부적합에 해당하면 AgriX에 조치사항 입력 |
| ↓ | | |
|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| 11~12월 | ▶ '25년도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발굴 ▶ '26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, 심의 등 |

가.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



[농식품부, 1월]

- 영농일지 작성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관원,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.

[지자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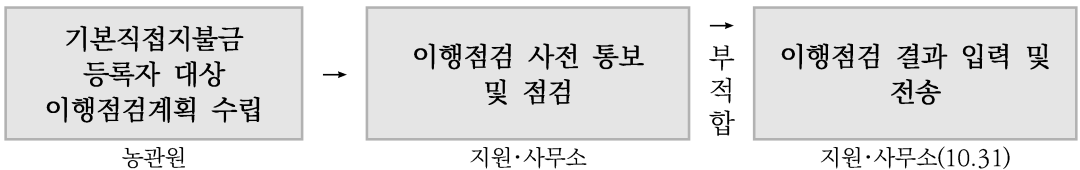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농촌사회의 고령화, 이행점검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온/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작성방식을 인정
- (세부 시행방안) 지자체 기술센터, 지역농협, 마을대표, 이장 등은 재배농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을 지도·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 - (작성항목) △재배 품목·작업단계, △농약·비료의 제품명·사용일자·사용량, △영수증 등 자료 및 사진 첨부, △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성 등

영농활동과 관련된 (1) 종자(종묘)·농약·비료 구매내역, 사용내역 등(영수증 포함) (2) 경운 일자 (3) 수확·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, 2년 이상 보관

- (작성방법) 농업인 연령, 온라인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기,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술
 - ▶ (수기작성)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있는 양식을 기본으로 실제 작성에서 및 표준양식을 온/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활용 권고
 - * 표준화된 수기 영농일지 활용하며, 개인 수기기록 모두 인정
 - ▶ (인터넷) 『www.agrion.kr '농업ON'』 및 타기관 시스템* 활용하여 필수항목 작성
 - * 예시) 지자체별 농가경영관리시스템(충남북, 경북, 제주), 농집(aT), GAP시스템(농관원)



나. 이행점검(농관원)



- 농관원은 영농기록 작성·보관에 대한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준수사항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록 작성·보관 여부를 확인한다.
 -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 농가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해당 농가에게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성조사 현장입회 요구서(시료수거 7일전 발송 안내문)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점검 계획 통보 생략이 가능하다.
 - *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도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 - 영농일지 점검은 해당 농가에 기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한다.
- 이행점검 시(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상의 ‘조사등’)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직불금 전액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농관원 지원·사무소는 이행점검결과 AgriX에 조치사항을 입력하여 기록 관리한다.
- 농관원 본원에서는 영농기록 작성·보관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,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자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.1일까지 AgriX에 통보하며, 10.31일까지 영농기록 작성·보관 등 준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공익직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.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작업일 (필수) | 년 월 일 | | | | | |
| 필지 (필수) | ※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(예) 1번 농지(512번지) 또는 1번(512번지)~ 10번 농지(537번지) | | | | | |
| 작목 (필수) | | | | 날씨 (필수) | | |
| 농약/ 비료 사용 (필수) | 농약 | | | 비료 | | |
| | 종류 | 제품명 | 사용량 (리터 or g) | 종류 | 제품명 | 사용량 (단위×포대) |
| | 살충제 | | 1리터 | 유기질 | | 10kg×10포대 |
| | 살충제 | | | 유기질 | | |
| | 살균제 | | 100g | 화학 | | |
| 제초제 | | | 화학 | | | |
| 작업단계 (선택) | ※ (예) 사전 준비, 경운, 파종, 정식, 작물관리, 수확 등 기재 세부작업 내용에 농약, 비료, 잡초제거, 수확 등 작업내용(살포량, 면적, 희석배수, 이용 농기계, 인력투입 등)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| | | | | |
| 세부 작업 내용 (선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전 준비) 가지치기, 농자재 구매, 토양개량제 살포 등 사전 작업 기재 ○ (경운 등) 밭갈기, 돌골라내기, 밭고랑만들기, 토양살충제, 비료 살포 ○ (파종) ○○ 종자를 ○리터 정도, 농지면적 ○○ha 정도 파종 등 ○ (정식) ○○ 묘종 ○주를 구입, ○센티 간격으로 ○○ha 정식 등 ○ (작물 관리) 물대기, 멀칭, 김매기, 병충해 방제, 열매숙기, 생육상황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물대기) 스프링클러로 몇 분 정도 물주기 등 * (김매기) 인력 ○○명 투입하여 ○○ha 잡초 제거 또는 ○○○제초제 ○○리터를 물 ○○리터에 타서 ○○ha에 살포 * (병충해 방제) ○○○농약 ○○리터에 물 ○○리터 타서 광역방제기 이용 ○○ha에 살포 * (열매숙기 등) 가지별로 중심과 1개만 남기고 모두 숙기 등 기재(인력 ○명 투입) ○ (수확) 벼 몇 가마 수확, 건조 작업, 출하 등 작업내용 기재(농기계, 인력 등) (또는 사과(홍옥) 수확, 도매시장 등에 출하 등 기재) | | | | | |

참고 39

영농일지 작성 예시(간편양식)

| 날짜 | 월 | 일 |
|---|--|---|
|  <p>필지지번 (농작물명)</p> | <p>※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예) 직불리 141 또는 직불리 1~3번지</p> | |
|  <p>농약명 사용량(봉/병)</p> | <p>※ 농약명 및 사용량 기재 예) 총사탄 1봉 또는 100g</p> | |
|  <p>비료명 사용량(포대)</p> | <p>※ 비료명 및 사용량 기재 예)아리존 1포 또는 20kg</p> | |
|  <p>경운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운 ※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</p> | |
|  <p>관수(물주기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수 ※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</p> | |
|  <p>파종·모내기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종·모내기 ※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</p> | |
|  <p>김매기(제초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김매기(제초) ※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</p> | |
|  <p>수확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 ※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</p> | |
|  <p>영수증 부착</p> | | |

※ 표준양식은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되어 제공되며, 해당양식을 참고하여 수기,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가능하며, 고령 등으로 영농일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편양식 활용 가능

VIII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



이 지침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관련 분야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.

| 담당기관 | 담당과 | 담당자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농업경영체과 | 과 장 계 장 담당자 | 054-429-4191 054-429-4196 054-429-4188 |

* 협조: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등

1

개요 및 일반사항

가. 목적 :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4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대상자는 ‘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’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

나. 근거 법령

-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17조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3
〈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15조 별표3〉

- [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]

-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

〈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7조〉

-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·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〈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8조〉

-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〈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9조〉

- 제12조,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

다.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점검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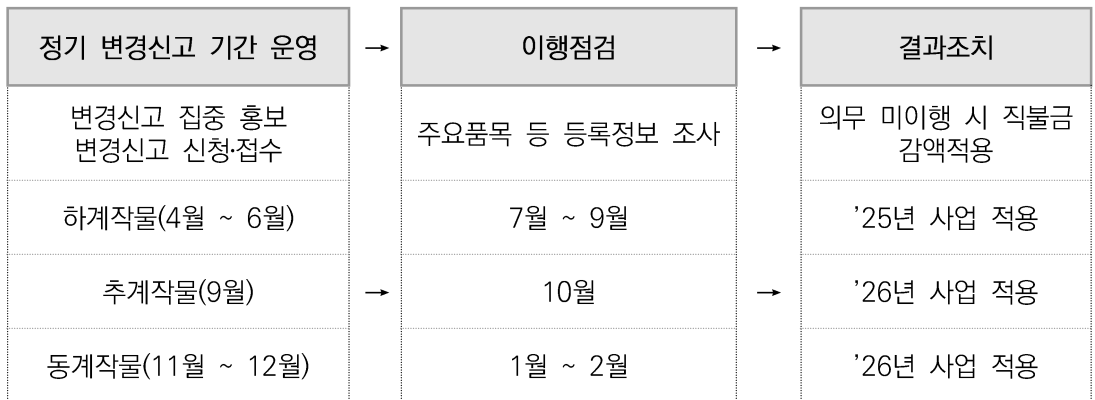
☑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업인은 직불금 감액 조치를 통해 변경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함

※ 변경신고 대상 중 수급관리 등 정책 활용도가 높은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 품목의 변경등록 관리에 집중

○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후 재배품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현행화가 미흡함

-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미이행자의 직불금 감액 조치를 적용하여 재배품목 정보 등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

라. 이행점검 관리 체계



| 구 분 | '24.11월 | '24.12월 | '25. 1~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'26.1월 | '26.2월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하계작물 | | | 제도 홍보 | 변경신고 | | | 이행점검 | | | | | | | | |
| 추계작물 | | | | | | | | | 변경 신고 | 이행 점검 | | | | | |
| 동계작물 | 시범운영 | | | | | | | | | | | 변경신고 | | 이행점검 | |